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4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방법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 신설(안제20조의2)
-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호, 안 제24조의2)
-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8조)
- 마.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 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 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3)
- 아.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 자. 녹지지역의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5)
- 차.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6)
- 카. 축사 등 농업용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7조)
- 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3)
- 파.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4)
- 하.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73조, 안 제7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1. 5. ~ 11.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용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제1항제1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1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제3항 중 “하천”을 “재해·재난”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과 제62조 사이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2조와 제7장 사이에 제2절(제73조·제7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생략)</p> <p>1. (생략)</p> <p>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u>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 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u></p> <p>3. ~ 4.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lt;신 설&gt;</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은----- ----- -----</u></p> <p><u>제20조의(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u></p> <p>① <u>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u></p> <p>1. <u>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u></p> <p>2. <u>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p> <p>② <u>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u></p> <p>1. <u>교통처리계획</u></p> <p>2. <u>주민편의시설계획</u></p> <p>③ <u>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p>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략)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 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

<신 설>

-----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 3. ----- 준용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u>&lt;단서 신설&gt;</u>  20. ~ 21. (생략)  ② ~ ③ (생략)  <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규정을 준용한다.</p>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u>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u>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u></p> <p>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p>
---	--

<p>&lt;신 설&gt;</p>	<p>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p>
<p>&lt;신 설&gt;</p>	<p>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li> <li>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li> <li>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li> </ol>
<p>&lt;신 설&gt;</p>	<p>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p>

<p>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u>50퍼센트</u> 이하로 한다.</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u>&lt;단서 신설&gt;</u></p> <p>20. ~ 21. (생략)</p> <p><u>&lt;신 설&gt;</u></p>	<p>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u>제32조에 따라 -----</u> ----- <u>60퍼센트</u> -----</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 <u>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u> 20.~ 21. (현행과 같음)</p> <p>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p>
---	--

<p>&lt;신 설&gt;</p>	<p>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u>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제6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하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p>	<p>제6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재난-----  -----</p>
<p>&lt;신 설&gt;</p> <p>제6장 군계획위원회  &lt;신 설&gt;</p>	<p>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p>



[별표 15] 생산농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 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